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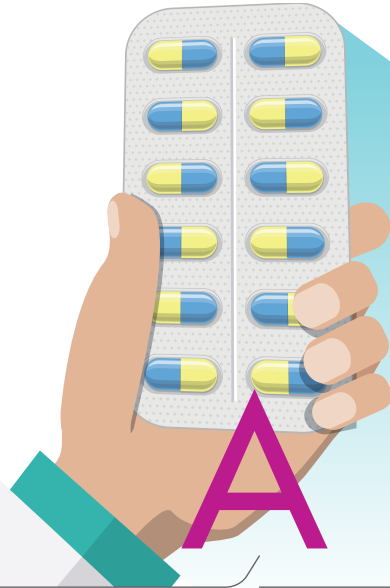
현장에서 의약품을 나눠줄 때 반드시 보건관리자가 해야 하나요?

현장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글 편집실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약사법

Q

현직 보건관리자입니다. 사업장 점검을 다녀보니 먹는 약을 회사에서 사서(일반의약품, 의약외품 구분하지 않음)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먹는 약 옆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본인이 직접 가져가게 한 후 서명 받아 놓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약사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내 보건관리자 비상주 시 의약품 지급(직원들이 파스 소화제 등의 가벼운 약품을 찾는 경우, 야간 근무자에게 약이 필요한 경우, 의약품 지급 대장 작성 등) 문제, 현명한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의약품은 사내 의사·간호사 보건관리자가 아니면 불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것 또한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사내 의사·간호사 보건관리자를 주·야간 지정하는 것 외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상비의약품 또한 편의점 등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건네주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보건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약국 또는 근처 편의점을 직접 방문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보건관리자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궁금증을 보내주시면 관련 전문가가 자세히 답변해드립니다.
54P <독자의 소리>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세요.



보건관리자의 투약 가능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 마. 가~라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여기서 '의료행위'의 의미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에 기초하여 행하는 검사·진단·처방·처치·시술·수술·지도 등의 행위"로 보고 있

습니다(「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보건복지부).

의약품 투여에 관해서 「약사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나, 전문의약품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의사에 의해서만 처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인 보건관리자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모두를 투여할 수 있으나 간호사 자격을 갖춘 보건관리자는 일반의약품의 투여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간호사 이외의 보건관리자는 약품 투여가 불가능합니다.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차이

「약사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차이는 이렇게 구분됩니다.

9.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 가.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 다.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10. "전문 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



안전상비의약품

「약사법」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에 의하면 안전상비의약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안전상비의약품(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나. 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 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